



제296회 임시회

2010. 12. 16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2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8일

#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주요정책의 입안 및 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- 기능(안 제2조) :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방향,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, 새로운 정책,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
- 구성 및 임기(안 제3조)
  - 자문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
 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가능
-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(안 제6조) : 공공혁신, 복지, 문화관광, 산업정책, 지역발전의 5개 분과 설치
- 수당(안 제9조) :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
- 유효기한(안 제11조) : 조례의 유효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동기 및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 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현재 각 부서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관련 위원회 및 「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도정배심원단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

#### (1) 현재 운영중인 관련 위원회 사례

정책자문단(분과위원회)	현재 운영중인 관련 위원회	비고
복지분과위원회	사회복지위원회	사회복지정책과
	장애인복지위원회	”
	여성정책위원회	여성정책과
	지방청소년위원회	”
	보육정책위원회	저출산고령화대책과
	생활보장위원회	사회복지정책과
문화관광분과위원회	문화예술진흥위원회	문화예술과
	환경보전자문위원회	환경정책과
	문화재위원회	문화예술과
	환경분쟁조정위원회	환경정책과
산업정책분과위원회	경제정책심의위원회	생활경제과
	산업단지심의위원회	기업유치지원과
	전략산업육성위원회	미래산업과

## (2) 도정배심원제 운영 현황

- 근거 : 「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('08.6.13)
- 인원 : 500명(예비배심원단, 시군별 인구비례에 의해 추천)  
※ 사안에 따라 5~30명의 도정배심원단 구성
- 기능
  - 공공요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의 결정
  -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
  -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
  -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#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 조례의 목적, 정책자문단의 기능, 구성 및 임기, 회의소집, 분과위원회 설치, 자료협조, 수당지급, 조례의 유효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어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,
-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  - 첫째,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는데, 정책자문단의 경우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모두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규정한 사유(제3조②, 제6조②)
  - 둘째, 분과위원회별 구체적인 자문 분야(제6조)
  - 셋째, 정책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경비지급 대책 및 개발연구원과의 기능중복 문제(제8조①, 제9조②)
  - 넷째,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유(제11조)

[참고자료]

## 타시도 정책자문단 운영사례

구 분	조례(규칙,규정)명	구성인원	위촉대상
행정안전부	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회 규정	130인 이내 (위원장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안전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li> <li>○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</li> <li>○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</li> <li>○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ul>
광 주	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및운영조례	60인이내 (위원장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</li> </ul>
대 전	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	70인이내 (위원장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·국·본부장의 추천</li> </ul>
울 산	울산광역시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	60인이내 (위원장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</li> </ul>

※ 3개 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 중에 있음